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년도
제3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신규채용시험(전문직(임기제), 연구직, 운전직(임기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임용예정인원 (6개 직위, 총 13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검시A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전국(본원 및 지방연구소)
검시B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2명	채용일로부터 2년	전국(본원 및 지방연구소)
독성학C	보건연구사	7명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전국(본원 및 지방연구소)
안전D	공업연구사	1명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전국(본원 및 지방연구소)
디지털E	공업연구사	1명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본원(원주)
행정지원F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9호)	1명	채용일로부터 2년	대구과학수사연구소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검시A	일반의무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법의학 관련 업무 - 변시체 부검·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 범죄사건 및 사고 조사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 대량재해, 의료사고, 감염병 관련 법의학적 조사 및 연구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등의 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검시B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독성학C	약학	보건연구사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및 연구 업무 -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 식품, 의약품, 생약 등에서 약독물 감정 -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연구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등의 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안전D	전기또는물리	공업연구사	○ 사건·사고현장화재 및 폭발 안전사고, 총기 및 흔적에 대한 감정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 및 재구성 ○ 수거 감정물에 대한 감정 - 의뢰된 감정물에 대한 전기공학·물리학적 지식 기반 법과학적 감정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등의 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디지털E	전자	공업연구사	○ 인공지능 분석 기술 개발 및 관련 감정 업무 - 디지털 이미지 처리, 소스코드 분석, 인공지능, 전자 문서 분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 각종 범죄 사건·사고 관련 디지털·의뢰 감정(디지털 문서 등) 업무 - 감정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인공지능 기반 활용 등 업무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등의 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행정지원F	운전	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9호)	○ 공용차량(출장감정, 감정물 운송 등) 운행 ○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배차관리 ○ 감정 지원 보조 업무,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4053호, 2023. 12. 26.)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54호, 2023. 12. 26.)
-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174호, 2023. 12. 30.)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75호, 2024. 1. 5.)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년(만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서기관·사무관, 연구사, 서기보(9급)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 예정자 포함

나. 선발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6.14.) 기준 / 우대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2024.4.19.)]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일반의무	자격증	○ (자격요건) * 자격증 취득+취득 후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 (과학기술서기관)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 (의무사무관)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취득 후 6년, 2년 경력)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병리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법의학
	약학	○ (자격요건) 약사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약물학,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생약학, 분석화학, 독성학 / 약품 분석, 조제,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근무 및 연구 경력
전기 또는 물리	학위	○ (자격요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전기공학, 물리학 / 전기공학을 기반으로 전자기기 고전압, 전력전자, 전기철도 근무 및 연구 경력 / 물리학을 기반으로 재료, 역학 전자기, 광학 등의 근무 및 연구경력
디지털	학위	○ (자격요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영상음성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근무 및 연구 경력 /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 학과
운전	자격증	○ (자격요건)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 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 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 무사고 운전경력(공고일 기준 전체기간) - 교통법규 준수이력(공고일 기준 전체기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 이후 운전경력(승합차 대형 36인승, 길아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이 있는자 - 자동차 정비(검사) 분야 자격증(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 * 과거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산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과거 1급) 보유 - 관련분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승용차 및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대형버스운전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전 분야 (공)	우대사	- (일반의무, 운전 제외)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 (운전 제외) 연구실적 경력은 2021.1.1. 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독성학)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면접의 5% 또는 10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2(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

○ 기본사항 ☞ 모든 응시자는 응시자 필수 제출서류 미비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 해외발급서류(경력, 학위)는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
- 금번 채용선발에는 반드시 1분야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중복 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한 자격증·학위 등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충족 및 학위·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6.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 공고문상에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 특허, 운전면허, 한자 등)

○ 자격(면허)증의 범위 ☞ '자격증요건으로 지원 시, 아래 서류 미비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증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시 시험 합격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시험 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으로 지원 시, 아래 서류 미비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 학위 지원의 경우 졸업증명서,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 관련분야 학위 인정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이수 과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판단 예정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하며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은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제출 가능
- 해외 학위의 경우 학위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는 우대대상에서 제외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 근무시간(주 00시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시험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4.9.) 이후 발급된 증명서 제출
 -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우대요건 및 가점사 고려사]

○ 기본사항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4.4.19.)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해외발급서류(경력, 학위)는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
- 우대요건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예 : 운전면허, 한자 등)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기간별로 차등배점하며, 경력기간 우대요건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 근무시간(주 00시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인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 확인 요함

- 시험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4.9.) 이후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마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최근 3년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2021.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은 동일계통 자격증이라면 우대요건 범위 내의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함

※ 예시) 기술사와 기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기술사만 인정

-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관련분야 학위의 범위

- '관련분야 학위'는 학·석·박사 학위가 제시된 경우 소지 여부로 차등 배점함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범위

-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것 1개에 대해 인정됨
- 공고문 하단 "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어능력검정성적(토익스피킹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제출 금지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의 경우, 어학성적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함
[붙임3] 영어능력검정성적기준 참조
- 어학성적 검정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24.6.28.까지 유효한 영어성적만 인정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는 동급과 관계없이 동일점수 배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개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가산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비]

정요소		배점	가기준
가산 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률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름 -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가산점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연구실적,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타 우대사항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4.9.(화) ~ 4.19.(금)	'24.4.17.(수) ~ 4.19.(금)	'24.5.30.(금)	'24.6.11.(화) ~ 6.14.(금)	'24.7.1.(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fs.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등 서류 제출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4. 17.(수) ~ 4. 19.(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성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 ☎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 ☎ 033-902-5064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서기관·사무관 10,000원 / 연구사 7,000원 / 서기보 5,000원
- 2024. 4. 1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기접수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코드 C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들의 휴대폰으로 응시번호 송부 예정

나. 서류전형합격자 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4. 5. 30.(금) ~ 6. 14.(금) 18:00까지(서류합격자 발표 시 재공지)
-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서류 외에 별도 서식에 따른 서류 등을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성과인사팀 채용담당자 앞
- (우) 2646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10, ☎ 033-902-5064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2024.6.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만, 기접수에 한해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조회예정, 제출된 서류(원본)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증빙서류 등은 작성요령 및 첨부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7. 1. ~ 8. 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상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의 경우, 연락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응시코드 A,B,F)

- 임용 예정일 : '24. 7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공무원 보수 규정」제35조[별표33])

구분	2024년도 연봉한계액(단위 : 천원)	
	한액(연)	하한액(연)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	66,122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5호)	-	50,012
운전서기보(일반임기제 9호)	45,548	-

- ※ 연봉 외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채용분야 '전국'인 응시자는 합격 후 결원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질 예정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원주) 및 지방연구소(서울 양천, 경남 양산, 전남 장성, 경북 칠곡, 대전 유성, 제주)로 발령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본원(강원 원주) 및 지방연구소(서울 양천, 경남 양산, 전남 장성, 경북 칠곡, 대전 유성, 제주), 합동법과학감정실(경기 수원,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로 전보 또는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이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에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확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또는 우대요건)에서 인정되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지라도 호봉 확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예 :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락 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획전략과 채용담당(☎ 033-902-5064)
 - 이메일 주소 : krhw030@korea.kr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전국 (본원 및 지방연구소)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의무, 임기제)	검시(A)	1명

주요업무	○ 법의학 관련 업무 - 변시체 부검·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 범죄사건 및 사고 조사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 대량재해, 의료사고, 감염병 관련 법의학적 조사 및 연구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의 업무, 기타 부서 이 지시하는 사
------	--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분야 지식 ○ 진단검사의학, 분자병리학 분야 지식 ○ 실험 및 데이터분석,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기본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검시(A)	
	자격증	
		○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법의학
	우대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법의학 * 응시자격요건(6년) 충족 이후 최대 20년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법의학 * 연구실적은 2021.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병리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전국 (본원 및 지방연구소)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임기제)	검시(B)	2명

주요업무	○ 법의학 관련 업무 - 변시체 부검·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 범죄사건 및 사고 조사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 - 대량재해, 의료사고, 감염병 관련 법의학적 조사 및 연구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의 업무, 기타 부서 이 지시하는 사
------	--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공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분야 지식 ○ 진단검사의학, 분자병리학 분야 지식 ○ 실험 및 데이터분석,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기본지식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검시(B)	
	자격증	○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법의학
우대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법의학 * 응시자격요건(2년) 충족 이후 최대 15년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법의학 * 연구실적은 2021.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전국 (본원 및 지방연구소)	보건연구사(약학)	독성학(C)	7명

주요업무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및 연구 업무 - 생체시료의 법독성학적 감정 - 식품, 의약품, 생약 등에서 약독물 감정 - 생체시료(소변, 모발 등) 및 압수품에서 마약류 및 환각물질 감정 - 약독물 및 마약류 감정 관련 분석법 개발 및 연구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의 업무, 기타 부서 이 지시하는 사
------	---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공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약물학, 독성학, 위생약학, 생약학, 약품분석학 및 약사법 등 약학 분야 기본지식 ○ 실험 및 데이터분석, 감정서 작성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기본지식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독성학(C)	
	자격증	○ 약사면허 소지자
우대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약품 분석, 조제,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약품 분석, 조제, 독극물 또는 마약류 분석 등 약학 분야 * 연구실적은 2021.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관련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 약물학,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생약학, 분석화학, 독성학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전국 (본원 및 지방연구소)	공업연구사 (물리 또는 전기)	안전(D)	1명
주요업무	○ 사건·사고현 (화재, 폭발, 안전사고, 기 및 적)에 대한 감정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 및 재구성 ○ 수거 감정물에 대한 감정 - 의뢰된 감정물에 대한 전기공학적, 물리학적 지식 기반 법과학적 감정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의 업무, 기타 부서 이 지시하는 사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역학, 전자기학 등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회로이론 등 전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법과학적 감정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실험 설계 및 연구 수행 능력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안전(D)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물리학, 전기공학
우대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물리학을 기반으로 재료, 역학, 전자기, 광학 등의 연구 및 실무 경력 - 전기공학을 기반으로 전기기기, 고전압, 전력전자, 전기철도 등의 연구 및 실무 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물리학을 기반으로 재료, 역학, 전자기, 광학 등의 연구 - 전기공학을 기반으로 전기기기, 고전압, 전력전자, 전기철도 등의 연구 * 연구실적은 2021.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본원 디지털과 (강원 원주시)	공업연구사(전자)	디지털(E)	1명
주요업무	○ 인공지능 분석 기술 개발 및 관련 감정 업무 - 디지털 이미지 처리, 소스코드 분석, 인공지능, 전자 문서 분석 등과 관련된 개발 업무 - 각종 범죄, 사건·사고 관련 디지털과 의뢰 감정(디지털, 문서 등) 업무 - 감정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SOP개발, 인공지능 기법 활용 등) 업무 ○ 감정 관련 행정 및 연구 의 업무, 기타 부서 이 지시하는 사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인공지능 관련 지식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가능 ○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논문 자료수집 이미지 처리, 통계처리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디지털(E)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우대사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영상·음성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분야 ○ 관련분야 연구실적 * 관련분야 :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영상·음성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분야 * 연구실적은 2021.1.1.이후 SCI(E), KCI(KSCI)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영어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직무기술서

근무예정지	임용예정 직급(직류)	지원분야(코드)	선발예정인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경북 칠곡군)	운전서기보(운전, 임기제)	행정지원(F)	1명

주요업무	○ 공용차 (출, 감정, 감정물 운송) 운행 ○ 공용차 유지관리 및 배치관리, 기타 감정지원 보조 업무
------	--

필요역	○ (공 역)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헌신
-----	--

필요지식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행정지원(F)	
	자격증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정지 예정인 자는 응시불가 * 국내 자격증에 한함
	우대사	○ 무사고 운전경력(공고일 기준 전체기간) ○ 교통법규 준수이력(공고일 기준 전체기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 이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합차 대형(36인승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운전경력*이 있는 자 * 폭과 너비 등을 고려하여 승합차 대형에 준하는 우등버스 등의 운전경력 인정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승용차 및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대형버스운전 경력만을 인정하며,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 근무형태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자동차 정비(검사)분야 자격증 보유 :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舊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산자격증 보유 :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가점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붙임 3

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표

영어능력검정 성적 기준표

시험의 종류	구 분	기 준 점 수		비 고
토 익 (TOEIC)	A	870점 이상		
	B	700점 이상 ~ 865점		
	C	700점 미만		미용시포함
토 플 (TOEFL CBT)	A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B	PBT	530점 이상 ~ 589점 이하	
		CBT	197점 이상 ~ 242점 이하	
		IBT	71점 이상 ~ 96점 이하	
	C	PBT	530점 미만	미용시포함
		CBT	197점 미만	
		IBT	71점 미만	
테 프 (TEPS)	A	452점 이상		
	B	340점 이상 ~ 451점 이하		
	C	340점 미만		미용시포함
지텔프 (G-TELP)	A	Level 2의 88점 이상		
	B	Level 2의 65점 이상 ~ 87점 이하		
	C	Level 2의 65점 미만		미용시포함
플렉스 (FLEX)	A	800점 이상		
	B	625점 이상 ~ 799점 이하		
	C	625점 미만		미용시포함

※ 영어성적 평가 점수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급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표 적용

※ 시험성적 구분표상 C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점수 배점을 하지 아니함 (0점 처리)

※ 각 시험 만점 : ① TOEIC(990점) ② TOEFL PBT(677점), CBT(300점), IBT(120점)
③ TEPS(990점)/NewTEPS:(600점) ④ G-TELP(100점) ⑤ FLEX(1000점)